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2022.09.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	본인	■ 당사 현장접수처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)
	○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■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“상세”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■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■ 공급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“상세”로 발급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■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 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
기관 추천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※ 인터넷청약(청약 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■ 소형·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 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 -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‘본인 발급분’에 한함. (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)
	○		위임장	본인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